



축산업자의 구속

노 영 한
(본회 전무이사)

검찰에서는 한강상류의 상수원보호지역에서 축산을 하는 축산인 외에도 충남 홍성을 비롯한 지방의 축산인들까지 구속을 하였다.

일반국민이 맑은물을 먹도록 수질오염을 막아야 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강물이 오염된다면 국토가 죽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수질오염을 막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검찰에서도 일벌백계로 구속을 하면 축산인들이 경각심을 갖고 분뇨처리시설을 할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구속을 한 것일 것이라고 생각하려고 하지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협회에서는 검찰을 비롯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담당행정부서에 진정서를 낸 바 있다.

첫째, 검찰의 구속이 지난해 용인의 경우에는 톱밥발효돈사를 해서 잘 하고 있는 양돈농가에 모돈사(母豚舍)에서 나오는 일부 처리되지 않은 뇨를 채취해서 구속한 바 있었다. 구속된 양돈인이 지역에서 덕망이 있는 양돈업계의 지도자인데, 바로 인근에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않은 사람을

두고 구속하므로써 일벌백계의 효과보다는 잘 해도 구속되는구나 하는 인상과 덕망있는 사람을 구속대상자로 택함으로써 법형평의 원칙에 더욱 의심을 갖게 하였다. 또한 최근 경기도 광주의 경우에는 분뇨처리시설을 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 완공단계에 있는데 구속함으로써 일벌백계로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는 본래취지와는 거리가 멀어지므로써 일벌백계라는 구속명분에 의아심을 갖게 만들었다.

수질오염의 주범이 대부분 생활하수가 52%이며 공장폐수 30%, 축산폐수는 18%라고 하지만 영세양돈농가는 비료로 이용되므로써 실제 축산폐수는 이보다 훨씬 적은 양이 수질을 오염시킬 것으로 보이며, 오염의 정도도 중금속이나 유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나 생활폐수에 비하면 그 정도가 아주 미미한 셈이다.

분뇨처리는 생산비를 절감하는 시설이 아니고 생산비를 높이는 시설이므로 어느 나라이고 정부의 보조 또는 장기저리융자가 뒤따르는 것이

“

우리는 생활하수처리의 책임자인 시장·군수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어본 바 없으며 유독성 농약으로 수질을 오염시키는 골프장사장도 구속되었다는 보도도 없이, 사회적 약자인 축산인, 그 중에서도 영세하거나 아니면 비교적 폐수처리를 잘 하려는 축산인을 구속함으로써 법의 존엄성보다는 법 집행의 형평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

국제화시대에 당연한 정책이다. 이러한 지원이 내년부터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그동안은 이렇다 할 지원이 없었다.

분뇨처리시설도 활성오니법을 비롯하여 몇 가지 권장하여 왔지만 영세규모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처리시설, 처리비용의 부담은 물론 시설을 하고도 잘 안되어 2종투자를 하는 등 혼선이 있었다.

처음 실시하는 제도이니 눈치를 보아가며 남이 해서 잘 되는 것을 보고 할 수 밖에 없는 농민의 입장에서 시설이 늦어질 수 밖에 없었다. 그간 정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처리시설에 대한 시험 연구가 없이 외국의 예를 기준으로 권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는 정착될 수가 없다는 진리는 분뇨처리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시설업체도 경험이 없어 시행착오를 하기가 일쑤였다.

이러한 제반 여건 때문에 분뇨처리가 늦어졌는데, 생활하수처리의 책임자인 시장·군수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어본 바 없으며, 유독성농약으로 수질을 오염시키는 골프장 사장도 구속되었다는 보도가 없이 사회적 약자인 축산인, 그 중에도 영세하거나 아니면 비교적 잘 하려고 하는 사람도 구속하므로써 법의 존엄성보다는 법 집행의 형평에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었다.

동양의 고전인 논어를 읽어 보지 못해서 잘은 모르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필독서라고 하며 과거 우리조상들은 과거시험에 응시하여 공무원으로 입신양명하려면 논어를 읽지 않고는 안되었다고 한다.

뒷부분에 정사(政事)에서 물리칠 것 4가지가 있는데,

첫째, 가르치지 않고 함부로 없애는 잔혹
둘째, 미리 알리지 않고 완성을 요구하는 폭악
세째, 명령은 느리게 하고 재촉하는 잔적
네째, 주어야 할 것을 내고 들임에 인색한 벼슬
아치의 행색

위의 4가지를 읽어보면 이번 분뇨처리정책은 논어의 4대 기본원리에 모두 저촉된다. 첫째, 둘째의 홍보 부족, 네번째의 자금지원, 세번째의 구속일변도 등 해당안되는 조항이 없다.

앞으로 사법고시나 공무원 임용 승진고사에 논어를 필수과목으로 추가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 보고 정 안되면 뒷부분만이라도 삽입했으면 한다.

그것도 어려우면 공무원으로서 4가지 물리쳐야 할 신조를 선서를 하든가 하면 이번과 같이 구속부터 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일 등은 없어질 것이다.